

# 알림

## 직장 내 임신 관련 편지

직원 네 명 이상 또는 가사 노동자 한 명 이상을 둔 고용주는 모두 뉴욕시 인권법(NYC Human Rights Law)에 따라 임신, 출산, 관련 건강 문제와 결부하여 직원이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며 계속 일할 수 있도록/신속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당한 편지를 제공해야 합니다. 해당 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권리 알림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림은 직장에 게시해야 합니다.

### 고용주

직원이 합당한 편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제공하십시오. 임신한 직원이 다음과 같은 합당한 편지에 관해 바로 동의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.

- 직원이 직장에 쏟는 노고를 소중히 여깁니다.
- 직원이 일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충족하도록 돕습니다.
- 직원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직장에 유지합니다.
- 이것은 직원의 권리이며 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.

고용주는 반드시 수유 정책을 직장에 게시해야 하며 직원이 첫 근무를 시작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. 인트라넷이 있는 경우 그곳에도 게시해야 합니다. 모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직원이 합당한 편지를 요청할 때 무시하거나 이에 신속히 응답하지 않거나 직원이 요구한 후 직원을 해고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거나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임신 증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한 편지 사항이 휴무와 관련된 경우에만, 뉴욕시 유급 병가법(NYC Safe and Sick Time Act)을 포함하여 시, 주, 연방 법으로 달리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사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직원

계속 근무하거나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합당한 편지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예는 다음을 포함하며,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- 쉬는 시간(예: 화장실 사용, 먹거나 마실 시간, 필요한 휴식 제공)
- 좌석이나 선풍기 등 근무 환경 변화
-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시 지원
- 휴가 또는 스케줄 조정
- 깨끗하고 화장실이 아닌 사적 공간, 유급 유축 시간 최소 30분, 해당 30분 외 기타 기존 유급 휴식/식사 시간 사용
- 가벼운 일 또는 다른 직책으로 임시 이동
- 출산 후 회복을 위한 휴가

직원에게 합당한 편지 유형은 직원과 고용주의 필요에 맞춘 것이어야 합니다. 합당한 편지를 요청했는데 무시당했거나 적절한 대안 없이 거절된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212-416-0197로 뉴욕시 인권 위원회(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)에 전화하여 신고하세요.

NYC.gov/HumanRights 또는 212-416-0197

Facebook, X, Instagram, YouTube, LinkedIn icons @NYCCHR

**NYC** Commission on Human Rights